

# 韓國의 出版研究

—1910年으로부터 1923년까지—

Korean Publications in Early Days

崔 垞  
(本 研 究 所 講 師)

<차 례>

1. 머 리 말
2. 武斷政策의 強行으로 癱痺된 出版
3. 文化政策과 出版界의 蘇生

## 1. 머 리 말

韓國의 出版文化를 研究함에 있어 먼저 時代區分을 할 必要가 있다. 韓國은 일찌기 金屬活字의 發明에 있어 그 어느 나라 보다 앞서고 있었던 까닭으로 自然 出版에 있어서도 特記할 만한바 없지 않았다. 그러나 不幸이도 印刷機의 發達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西歐의 그것에 비해 書籍의 大量生産과 그 普及에 뒤지고 말았다.

따라서 韓國의 近代的인 出版文化는 甲午更張부터 그 始發點을 잡을 수 밖에는 없다. 먼저 여기서 韓國의 出版文化를 研究함에 있어 時代的인 區分을 할 必要가 있다. 第一期를 韓帝國時代로 잡고 甲午更張 이후 乙巳保護條約때까지를 그 前期로 한다면 그 後期는 乙巳保護條約 이후 日韓合併때까지로 또한 細分할 수가 있겠다.

第二期로는 日韓合併直後부터 向後 十個年間的 武斷政治時代이고 第三期로서는 己未年 獨立萬歲運動이후의 소위 文化政治란 民族懷柔時代이고 第四期로는 南次郎總督의 韓民族文化의 抹殺時代 그리고 第五期로서는 八·一五解放이후 現今에 이르는 時期까지로 대충 區分해야 되겠다.

本論文에서는 第二期인 武斷政治時代와 第

三期인 民族懷柔時代의 前半期에 걸쳐 記述하려 한다.

## 2. 武斷政策의 強行으로 癱痺된 出版

韓國의 出版 및 雜誌界는 1910年 8月 日韓合併을 契기로 暗黑期로 들어갔다. 그것은 第一代總督인 寺內正毅(1910.10~1916.10)의 言論彈壓政策의 強行때문이다. 寺內正毅는 現役 陸軍大臣으로 第三代 統監을 兼任하였을 때부터 이미 韓國人의 言論彈壓에 着手하여 마침내 日韓合併이 斷行되자 더욱 苛酷한 言論彈壓으로 君臨해던 것이다. 이른바 그의 武斷政策의 強行으로 韓國人의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는 完全히 剝奪되었다. 이리하여 1919年 3月 1日 己未年 獨立萬歲運動이 爆發되었을 때 까지 第一次 言論暗黑時代를 가져왔다.

寺內正毅가 위와 같은 森嚴한 威壓만으로서 韓民族에 臨한 것은 물론 日本民族性에서 비져나온 것이었으나 또하나의 理由는 異民族統治의 經驗이 없었던데에도 基因된다. 이러한 所謂 武斷政策은 第二代 總督인 長谷川好道(1916.10~1919.8)에 그대로 踏襲되었다. 이러한 寺內正毅의 言論政策은 당시 서울에서 發行되던 日本人 新聞에도 假借없이 摘要되어 日本人들의 非難거리가 되었다. 그것은 日本人發行의 新聞에 對하여 계속적으로 發行停止,

發賣禁止 혹은 日本人記者의 強制退韓處分 등이 強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日本人發行的 여러 新聞들을 買收廢刊시키는 方法도 썼다. 三·四千圓 乃至 一萬圓으로 이를 買收하였는데 峯岸繁太郎의 「京城新報」는 價格調節로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社會主義記事를 실렀다 해서 發行禁止까지 되었다가 결국 高額으로 買收되고 말았다. 이때 事情에 관해서 한때 「朝鮮實業新聞」을 發行했던 靑柳南冥은 『浪人組 頭目으로서 黃金으로 머리를 쓰다듬 받을 줄이야 나는 꿈에도 생각치 못하였다』(1) 라고 記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寺內正毅는 記事制限에 관한 事項을 強要하여 在韓日本人新聞記者들의 取材活動을 抑壓하여 噁聲의 標的이 되었다.

그러므로 寺內로부터 長谷川 二代總督에 걸친 1919年 3月까지는 時事와 政治를 다룰 수 있는 韓國人の 新聞이란 말할것도 없고 하나의 時事雜誌조차 없는 言論暗黑時期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만 韓國文의 日刊新聞으로 韓帝國時代의 「大韓每日申報」를 買收하여 總督府機關紙로 만든 「每日申報」와 1917年 1月부터 發行된 朝鮮總督府發行的 國文版 月刊雜誌 「朝鮮」이 있었을 뿐이었다.

前記 「每日申報」는 道·郡·面 등의 各級行政官廳과 기타 官吏들에게 強制購讀케 하였고 「朝鮮」도 역시 官公署 기타 韓國人들에게 配付하여 總督府施政方針에 順應케 하였다. 특히 『在外朝鮮人中の 知識階級에 屬하는 者 또는 地方의 主要人物에 對해서 大正 7年(1918年)以後, 京城에서 發行하는 「每日申報」를 無償配付하였고 또 大正 11年(1922年)부터 다시 本府發行的 雜誌 「朝鮮」을, 昭和 2年(1927年)부터 民間發行的 雜誌 「新民」등을 配付해왔으나 그후 여러 事情에 依하여 雜誌의 配付를 中止하고 「每日申報」만을 配付하고 있는데 昭和 12年度(1937年)에 있어서의 配付數는 252部이었다』(2)라고 前記 新聞과 雜誌의 無償配付한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總督府當局은 1913년에 들어스자 韓國人の 言論, 出版自由의 抑壓을 감플라지하기 위해 無難한 宗教, 文藝, 兒童 등의 雜誌를

數三人에게 許可하였다. 이바람에 韓帝末期부터 雜誌 「少年」을 主宰하여 出版實績이 많은 崔南善에게 同年 1月 1日字로 「붉은저고리」의 創刊을 許可하였다. 同誌야말로 日韓合併이후 武斷政策이 強行되던 渦中에서 나타난 最初의 雜誌로서 表紙題號 위에 붙은 『공부거리와 놀이감의 화수분』이란 說明에서 보듯이 어린이 教育雜誌를 表面에 내세우고 나왔으나 一面 大衆의 文化 및 娛樂을 위한 雜誌이었다.

이제 「붉은저고리」各號의 內容을 드러다보면 詩歌로서 은진미륵, 첫봄, 나비놀이 外 八編을 비롯해서 溫達, 率居 등의 古談, 鄭夢周, 金時習, 李유돈, 린컨 등의 史談, 낙타, 빨소, 코코아 등의 物類畜說, 飛行船과 飛行機, 童話, 訓話, 笑話 등으로 編輯되어 있다. 同誌의 發行人은 金興濟이고 菊倍版 八面으로 1日과 15日의 月 二回刊이 었다.

그후 1915年 12月 7日에는 宣教師 奇義名名儀의 「基督申報」의 創刊을 보았고 다음해인 1916年 2月에는 역시 協成神學校의 都伊明의 「神學世界」가 그리고 1918년에는 天道教機關紙인 「天道教月報」 및 張斗徹의 週間誌인 「泰西文藝新報」 등의 登場을 보았다. 韓國人の 雜誌, 出版에 관해서는 이미 韓帝國時代에 統監府의 周旋으로 制定된 出版法(1909年 2月 法律第 6號)을 總督府가 그대로 踏襲하였기 때문에 許可願을 낸후 總督府當局으로부터 許可를 받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이 出版法은 물론 韓國人에게만 適用되는 것이고 在韓日本人들은 納本만 届出하면 되는 出版規則이 摘要되었다. 그런데 出版法은 全文十五個條로 構成되어 있어 定期性을 가진 雜誌는 許可를 얻어야 할 것과 書籍出版과 더불어 原稿檢閱을 規定하고 있으며 이에 違反하였을 때는 罰金 100圓과 懲役 3年 以下の 體刑까지 規定하였다. (3)

그런데 前記 「붉은저고리」는 1913年 6月 15日 發行 第 12號가 總督府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어 強制廢刊되고 말았다. 이에 관하여 역시 崔南善의 實兄 崔昌善名義로 1913年 9月 5日字로 發行 許可된 月刊 少年雜誌 「아이들보이」 第 12號(1914年 8月) 廣告欄에 비로소 다음과 같이 그 經緯를 밝혔다.

『……「붉은저고리」는 우리 兒童教育에 適當한 補助機關이 無함을 慨嘆하여 新文館으로서 發行하다가 第12號에 至하여 官令으로 停廢된 것이니 우리 兒童文學의 先驅로 趣味와 實益의 無盡藏이라하여 歡呼의 聲이 江湖에 遍滿하던 者라……』

解明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하면 苛酷한 武斷政治아래 놓여져있던 당시의 社會雰圍氣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總督府當局의 脾胃를 거슬리지 않고 다시 續刊誌의 許可를 얻기 위한 自重의 빛을 보이고 있었음을 엿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보이」도 1914年 8月 第12號를 마즈막 號로 廢刊되었다. 同誌의 編輯에는 李光洙가 擔當하였다.

이에 앞서 新文館에서는 1913年 9월에 새로 發行許可를 얻어 李光洙 編輯擔當으로 「새별」을 創刊하였다. 이것은 前者의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보다 그 程度를 약간 높인 이른바 高等學校 程度 것으로 編輯되었다. 즉 『……內容外形에 一大革新을 加하고 程度를 稍高하여 進學益智上 無等한 良師友를 作케 하였으며 더욱 新文章 造成에 注力하여 우리 語文의 精華를 發揮케 하였으니……云云』(4) 함과 같이 同誌의 새 連載物인 『읽어리』는 당시 各 私立 高等普通學校의 좋은 參考教材가 되었다.

「새별」은 1919年 1月 5일에 第16號를 내었으나 그후 中斷되었다.

崔南善이 主宰한 新文館이 武斷政治아래 雜誌發行에 있어서 不屈의 情熱을 기울였음은 이상으로써 알 수 있는 바이나 다시 이에서 한 걸음 나아가 1914年 10月 1日, 本格的인 大衆啓蒙雜誌인 「青春」을 創刊한 사실이다. 崔南善은 朝鮮光文會의 古典發刊과 더불어 이 「青春」誌 運營에 注力하였다. 이때 그의 抱負와 情熱에 관해서는 그의 執筆로된 同誌 創刊辭格인 『아모라도 배워야』라는 一文에서 엿 볼 수가 있겠다. 즉

『아모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하며 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아모것보담도 더욱 배움에서 못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배움 하나가 못하

여 다 못하다 하오리다. 우리의 배움도 컸었지만 다른이 배움에 더 나아감이 있스니 우리의 배우던것도 조왔지만 남의 배우는것에 더 조흔것이 있스니 이는 얼마 아닌동안 허고 아니함으로서 생긴 틀림이되다. 우리들이 깨칩시다. 배움이 남만 못한것을 깨치며 오늘에 가장 바쁜 일이 배움임을 깨치며 아울러 배움에도 잘할만함을 깨칩시다. 우리속에 가득한 배움을 잘할 만흔 힘을 집어 넣시다.

빈말 맙시다. 배우기만 합시다. 걱정맙시다. 배우기만 합시다. 온힘을 배움에 들입시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더불어 배움의 동무가 되려합니다. 다 같이 배웁시다. 더욱 배우며 배웁시다.』

이처럼 崔南善은 「青春」誌 發行의 抱負와 目的을 含蓄性있게 밝히면서 民族啓蒙과 智的向上에 置重하였다. 이는 韓帝末期에 불일듯 일어난 實力養成主義를 계속 韓國民族 大衆에게 婉曲하게 呼訴한 것이라 본다. 寺內總督의 武斷政策아래 原稿의 事前檢閱을 通過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文章으로 表現할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同誌의 編輯內容도 歷史, 科學, 教養, 文藝등 比較的 溫和한 것들로 充當되었다. 이를테면 마호벨傳, 周時經先生歷史, 萬里長城이라든가 世界의 創造, 王學提唱에 對하여, 혹은 女子中心論이라든가 百學名解, 試驗과 腦스는법, 메스볼說明이라든가 詩, 時調, 紀行文 그리고 西歐의 文藝作品으로 초서, 밀톤 섹스피어, 톨스토이 등의 名作紹介등으로 꾸며졌다. 말하자면 啓蒙과 文藝가 그 主가 되어 西歐文化의 輸入에 汲汲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할 것은 「青春」誌가 決코 文藝誌는 아니었다는 點이다. 물론 同誌가 西歐의 名作을 많이 紹介하였고 時調, 漢詩, 雜歌, 新體詩歌, 普通文, 短篇小說 등을 『懸賞文藝爭先應募』하여 韓國의 新文學確立에 寄與한바 至大하였음이 認定되는 바이나 그렇다고해서 이를 곧 文藝誌와 同一視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嚴酷한 武斷政治下, 民族의 自由로운 言論과 思想이 抑壓을 强要당하였을 때이라 比較

的 無難한 文藝紹介와 修養啓蒙에 主力할 밖에는 道理가 없었기 故이다. 이것은 당시 武斷 總督政策下에 許容된 最大限의 表現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된 冷酷한 規制속에서라도 韓國民族은 前進하여야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韓國의 文化運動은 自然, 『文藝를 主로하게 되고 따라서 雜誌界도 文藝와 啓蒙雜誌가 主流가 되었』(5)을 따름이다.

『青春』誌는 위와 같이 一切의 時事問題와 政治問題를 다루지 못한채 啓蒙과 文藝를 中心으로 編輯發行되었으나 그래도 이에 못마땅히 여긴 總督府當局은 1915年 3月 第6號가 나오자 突然 同誌의 發行停止處分을 한후, 이어 同誌의 發行許可를 取消하였다. 그 理由는 國是 違反이라는 것이었다. 그후 1916年 5月 16日 同誌는 滿 14個月만에 다시 發行許可를 얻어 續刊號(第7號)를 四千部 發行하자 이내 賣盡되었다. 그러나 第10號부터는 原稿檢閱에 지나치게 時間을 所要하여 2個月만에 겨우 한번씩 發行하게 되어 購讀者의 數는 減少되어 같은 刊號로서 마침내 1918年 9月 第15號를 最終號로 내고 살아 질수 밖에 없었다.(6) 그런데 同誌의 執筆陣으로서는 主宰者 崔南善을 비롯하여 李光洙, 檀相老, 李相協, 秦學文, 玄相允, 洪命憲, 閔泰瑗 등이었다.

前記한 바와 같이 寺內, 長谷川 兩總督時代의 韓國出版 雜誌界는 萎縮一路를 거를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914년부터는 그 舞臺를 옮겨 日本에서 각종 雜誌를 發行하게 되었다. 그것은 日本에서 發行하면 日本出版法에 따라 內務省에 納本만 届出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東京에서 1914年 玄相允, 秦學文 등의 東京留學生들이 主動으로 「學之光」을 創刊하였고 1918년에는 東京女子留學生 親睦會의 後身인 學興會에서 「女子界」(年三回刊)를, 역시 1919年 2月에는 金東仁, 朱耀翰이 中心이 되어 文藝雜誌 「創造」를, 그리고 洪蘭波가 文學·音樂·美術雜誌로 「三光」을, 京都에서는 「學友」를 역시 同年 2월에 創刊하여 國內로 發送하여왔다. 이에 당황한 總督府當局은 그때 그때 郵遞物을 關東하여 「學之光」 「創造」등을 押收하였다. 이러한 彈壓가운데에서도 「創造」

는 第9號까지 계속 發行되었다. 그후 1920年 4月 東京 朝鮮基督青年會에서 發刊된 「現代」(第四號)도, 發賣禁止되었다.

韓國人에게 時事問題를 一切 다루지 못하게 한 이 時期에 日本人 竹內綠之助는 時事와 文藝를 中心으로한 國文版 「新文界」를 1917년에 創刊, 韓國人의 執筆原稿를 실어 발행하였다. 그는 또한 같은 해에 日本人 執筆에 國文版인 「半島時論」을 발행하여 韓國人의 耳目을 끄었다. 물론 이것들도 東京에서 印刷되어 韓國에 發送된 것이다.

한편 出版界의 動向은 어땠던가. 出版界 역시 原稿의 事前檢閱關係로 말미암아 至大한 抑壓을 당하였다. 책 한 卷 내려면 原稿檢閱이란 難關을 突破해야 되었으므로 時間의 延延은 말할것도 없었고 때로는 原稿却下로 해서 出版計劃이 水泡로 돌아가는 일이 非一非再이었다. 이러한 難境속에서 出版을 한다는 것은 苦難을 스스로 사고 들어가는 것과 同一하였다. 따라서 總督府當局의 檢閱通過를 노리기 위해서는 自然 빠있는 著書는 出版할 수가 없었고 無事主義로 一貫할 밖에는 別道理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時期에 出版物은 거의가 無難한 古典, 歷史, 東西의 小說, 語學, 傳記, 이야기책類의 것이 間歇적으로 上梓되었을 따름이었다. 이를테면 「芝峰類說」이라든가 「춘향전」 「신교 수호지」 「옥루몽」 등의 六錢小說文庫, 「검흥의 설음」 「불상한 동무」 「想思別曲」 「朝鮮俚諺」 「神聖實記」 「三一神話」 「最新唱歌集」 「偉人의 소리」等屬이다. 한편 出版社로서는 新文館 및 朝鮮光文會를 비롯하여 東洋書院(閔溶鎬) 博文書館(盧益亨) 滙東書館(高裕相) 光東書局, 寶文館(洪淳泌) 新舊書林(池松旭) 中央出版社(鄭道永) 廣文書市(鄭敬憚) 등이 있고 宗教系統으로서는 聖書公會가 「聖經」을, 朝鮮耶蘇教書會와 天主教系統에서 각종 基督敎書籍을 發行하고 있었다.

이렇듯 苛酷한 制限된 武斷政治下에서도 각 出版社는 屈치않고 出版文化를 위하여 꾸준한 情熱을 傾注하였음은 높이 評價해서 좋을 것이다. 특히 雜誌와 通俗의 많은 出版物의 歷史, 地理, 語韻, 文學, 經學, 全集類의 각종

古典을 大量으로 出版한 新文館 및 朝鮮光文會가 쌓아놓은 業績은 實로 特記할 일이었다.

- 註(1) 靑柳南冥著「總督政治史論」p. 91. 1928年刊  
 (2) 朝鮮總督府編「朝鮮總督府施政年報」p. 653. 1937年度版  
 (3) 出版法 第11條 許可를 얻지않고 出版하는 著作者 發行者는 下記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國交를 阻害하고 政府를 變壞하려든가 國憲을 紊亂하는 文書圖書를 出版하였을때는 3年以下의 役刑.  
 2. 外交 및 軍事의 機密에 관한 文書圖書를 出版하였을 때에는 2年以下의 役刑.  
 3. 前2號의 경우밖에 安寧秩序를 妨害하고 또는 風俗을 壞亂하는 文書圖書를 出版하였을 때에 10個月以下의 禁獄.  
 4. 其他의 文書를 出版하였을때에는 百圓以下의 罰金 前項文書圖書의 印刷를 擔當한 者의 罰도 역시 같다.  
 (4) 「靑春」…1914年 12月號…所載廣告.  
 (5) 李鍾洙筆“朝鮮雜誌發達史” 1934年 5月號「新東亞」所載.  
 (6) 洪一植著「六堂研究」pp. 48~49. 1959年, 日新社刊

### 3. 文化政策과 出版界의 蘇生

武斷政策의 馬脚은 마침내 1919年 3月 1日을 期하여 總蹙起한 己未年獨立萬歲運動으로 말미암아 餘地없이 나타났다. 그것은 彈壓第一主義의 武斷政策만으로는 韓國民族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立證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日本 自體內部에서도 深刻한 反省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大阪朝日新聞은 『이번의 朝鮮民衆의 蜂起는 日本의 對韓政策의 失敗를 證明하는 것이다. 現代의 植民政策은 옛날과 달라 武斷으로서 終始될 것이 아니라 敎化를 主眼으로 한 文化政策으로써 達成되어야 한다. 強壓的인 方法은 가장 拙劣한 手段이다. …(中略)…이것을 계기로 日本의 지금까지의 對韓政策이 反省되고 至急히 是正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7)하였고 竹內線之助의 國文版 「半島時論」도 “朝鮮事件의 眞相을 論하여 我政府 및 國民에게 望함”이란 題目으로 『……朝鮮事件은 突發的으로 처음 대단히 誤解하여 新聞에도 眞相을 傳한 者가 없었다. 內地一流新聞도 這間事件을 見함이 數十年前의 朝鮮에 對한 態度로서 愚民으로 思한外 別로 同情을 不傾하고 責을 宗教團體에 貸하고

甚한 者는 外國宣教師를 煽動者地位에 세웠다. …(中略)…日鮮永久의 基礎를 만든은 이때를 버리고 他에 그 機會를 求하기 不能할지니 予는 熱誠으로 政策의 一大刷新을 望하는 바이로다……』(8)

이리하여 日本은 드디어 武斷政策을 拋棄하고 새로 海軍大將 齋藤實(1919.8~1927.3)을 第三代 總督으로 任命한 후 文化政策을 내세웠다. 물론 이것은 收拾策으로 내세운 懷柔政策이었다. 着任하자마자 南大門驛頭에서 姜宇奎의 爆彈洗禮를 받아 危機를 冒禬한 齋藤實은 곧 韓國人의 言論暢達을 許可하겠다는 諭告를 發表하였다. 이로서 日韓合併이래 10年만에 抑壓封鎖되었던 韓國人의 言論, 出版, 結社의 길은 다시금 解除되었다.

1920年에 들어스자 總督府는 韓國人의 勢力均衡을 考慮해가면서 조심스럽게 三種의 日刊新聞과 다음의 列記하는 각종 月刊雜誌 및 團體의 出現을 許容하였다. 즉 出版法에 依한 月刊雜誌로서 1920年에 나타난 것으로서는

「曙	光	京城	李 秉 祚
「開	闢	”	李 敦 化
「權	花	”	金 鳳 杓
「學	生 界	”	吳 天 錫
「學	生 之 友	”	朴 永 鎮
「廢	墟	”	高 敬 相
「共	濟	”	趙 誠 淳
「修	養	”	高 敬 相
「새	벗	”	韓 錫 源
「서	울	”	張 道 斌
「新	靑 年	”	李 鼎 燮
「文	友	”	李 秉 祚
「至	氣 今 至	”	李 顯 奎
「家	政 新 聞	”	任 英 宰
「蓄	薇 村	”	朴 英 熙
「工	友	”	崔 宗 煥
「新	半 島	”	吳 宗 燮
「經	學 院 雜 誌	”	鄭 崙 秀
「朝	鮮 佛 教 叢 報	”	李 能 和
「大	東 斯 文 會 報	”	崔 永 年
「朝	鮮 印 刷 職 工 會 報	”	金 重 煥

「通信文學會報」	釜山	全錫準
「濟世申報」	”(藥報)	林貞基
「開拓」	仁川	吳天錫
「朱命基商店報」	”	朱命基
「麗光」	開城	禹觀亨
「天一藥報」	京城(藥報)	趙寅燮
「普惠月報」	”(“)	具稷書
「濟世月報」	”(“)	金濟鉉
「大同商報」	”	朴基敦
「都屋商報」	”	洪起奭
「亞一商報」	”	崔熙鳳
「新女子」	”	베링그
「女子時論」	”	魚源
「京鄉雜誌」	”	元亨根
「聖教雜誌」	”	班禹巨
「時兆月報」	高陽	表來萬
「教會指南」	”	表來萬
「朝鮮聖公會報」	京城	閔在恩
「中央青年會報」	”	巴樂·萬
「救世軍年報」	”	申泰斌
「基督教月報」	”	渡瀨常吉
「救世新聞」	”	윌리암스·구분스
「새소리」	”	盧泳鎬
「世光」	春川	都瑪蓮
「神學指南」	載寧	史佑業 <sup>(9)</sup>

그리고 각종 團體로서는 이미 親日團體로 存  
在했던 禮智俱樂部(1916年 11月·崔翰宇, 權泰均)  
大正實業親睦會(1916年 12月·閔泳綺, 趙鎮泰),  
工友俱樂部(1919年 12月·崔宗煥, 金大明), 維民  
會(1919年 12月·高義駿, 金尙默), 朝鮮經濟會(19  
19年 12月·朴泳孝, 崔鎮)外에 다음의 9個團體가  
새로 許容되었다.

- 國民協會——(1920年 1月·閔元植, 金丸)
- 大東斯文會——(1920年 1月·鄭萬朝, 魚允迪)
- 勞動共濟會——(1920年 1月·朴重華, 朴珥圭)
- 勞動大會——(1920年 2月·金光濟, 李說鍾)
- 商務研究會——(1920年 2月·金光照, 魏洪奭)
- 革新團——(1920年 2月·劉得信, 盧俊鐸)
- 儒道振興會——(1920年 3月·尹用求, 鄭鳳時)
- 商務協會——(1920年 5月·鄭民和, 李重赫)
- 朝鮮青年會聯合會——(1920年 3月·吳祥根, 張  
德秀)

이로서 韓國民族은 日韓合併이후 처음으로  
極히 制限된 것이나 言論, 出版, 結社의 活  
動을 再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許可된 新聞을  
비롯한 雜誌, 團體들은 그 性格과 構造上으로  
보아 大體로 三對二의 比率로서 親日系의 優  
勢한 進出을 가져왔다. 이는 齋藤總督의 言論  
政策의 一面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時期에 드물어진 社會現象으로서는 오래간만  
에 손수 雜誌를 만들 수 있다는 기쁨에서 投  
資 乃至 寄附金を 내는 人士가 많았다는 點이  
다. 그 좋은 하나의 實例가 開關社이었다.

開關社는 天道敎人인 博川의 崔宗楨이 千圓,  
邊君恒이 五百圓을 寄附한 것을 그 基金으로  
하여 李敦化, 朴達成, 李斗星등이 1919年 12月  
20日에 組織된 것으로 첫 事業으로 學術, 宗  
敎, 文藝의 「開關」을 發行하였다. 또 다른 하  
나의 實例로서는 資本金 30萬圓의 株式體로  
1920年 5월에 漢城圖書株式會社가 登場된 사  
실이다. 一時에 이처럼 多額의 基金이 出版事  
業에 投資되었다는 것은 實로 日帝下 韓國出  
版史上 처음으로 되는 일이다. 이 劃期的인 出版事  
業에 對한 뜨거운 意欲은 西北出身의 人士들  
이 그 主流가 되어 이룩되었으나 이는 『우리  
의 進歩와 文化의 增長을 爲하여 終始努力하  
기로 自任함』이란 同會社 創立趣旨속에서 특  
특히 볼 수가 있다.

이제 漢城圖書株式會社의 幹部陣營을 보면  
社長에 李鳳夏, 專務에 李鍾駿, 取締役에 韓  
奎相, 張道斌, 朴泰鍊, 監査役에 韓潤鎬, 許  
憲, 顧問으로는 金允植, 梁起鐸, 그리고 相談  
役에는 金相殷, 金泚炳, 金煥, 劉煥燮, 李  
遠元, 李鍾駿, 李忠健, 李恒鎬, 林祐敦, 出版  
部長에는 張道斌이 각각 就任하였다. 編輯陣  
營으로서 月刊言論雜誌 「서울」 主幹에 張  
道斌, 「學生界」 主幹에 吳天錫, 編輯員에 金  
煥, 田榮澤, 金成龍, 盧子泳 雜誌記者에 金愷,  
劉賢淑外 六名과 囑託으로 金東仁, 崔八鋪外  
13名의 知名人士를 起用하였다. 이리하여 翌  
1921년부터는 鄭然圭作 「理想村」을 비롯하여  
「朝鮮大地圖」 그리고 「데모스테네스」 「잔막크」  
「루쏘」등의 傳記物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한편 同年 七月에는 또하나의 株式體의 朝鮮

圖書株式會社가 資本金 25萬圓으로서 發足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각각 書廬을 가지고 販賣와 出版을 兼業하여 온 既成 出版社 代表들이 糾合되어 이루어진 圖書都賣와 出版을 兼한 새로운 組織體이다. 그리고 同社의 陣容은 다음과 같다. 社長 池松旭, 專務 洪淳弼, 支配人 金元祐, 取締役 南宮潛, 盧益亨, 監査役 金相冀, 南廷哲, 그리고 編輯顧問에는 金明植, 南廷哲등이다. 그 밖에 天一書館, 翰南書林, 廣益書館, 德興書林, 永昌書館등이 역시 出版活動을 하였다. 이 무렵에 出版된 一部 圖書들 들어보면 李何夢 翻譯의 「海王星」을 비롯하여 金億 譯의 詩集 「愜惱의 舞臺」 懸吐漢文의 「玉樓夢」 韓龍雲撰의 「精道講義 榮根潭」 「海東名推 古今聯句集」 「內閣板七書具解 및 小學通鑑」 「東洋歷代女史詩選」 洪秉璇著의 「兒童心理學」 崔相浩著의 「急用英鮮會話」 李景華著의 「廣濟秘笈」 「大方草簡牘」 「家庭百方吉凶秘訣」 安廓著의 「自覺論」 劉敬鍾編纂의 「山森經濟」 苦學生 姜咭會編의 「修學의 路」 등이 그것이다.

雜誌刊行에 對한 韓國社會의 意欲은 계속 旺盛하였다. 1921년부터 1923년에 이르는 사이에도 總督府當局의 까다로운 許可網을 뚫고 間歇의으로 여러 雜誌가 나타났다. 즉 1921년 2월에는 活文社의 「새동무」, 2월에는 尹弼求의 「儒道」, 李鍾覺의 社會敎化誌인 「新民」이 각각 創刊되었고 3월에는 中央基督青年會의 「青年」과 朝鮮青年會聯合會의 「我等」 및 江景南 鮮文藝社의 家庭雜誌 「晨鷄」 등이 創刊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啓明俱樂部의 「啓明」, 6월에는 樂園社의 「樂園」과 「綠星」 등이 나왔고 吳宗燮의 「新半島」가 「新民公論」으로 改題되어 나타났다.

이어 1922년 3월에는 白大鎮의 「新天地」와 朴熙道の 「新生活」 그리고 金東燦의 週刊 「朝鮮週報」 등이 역시 出版法에 依해 創刊되었다. 그런데 同 9월에 들어스자 總督府當局은 雜誌 許可方針을 若干 緩和한 듯이 同 9월 1日 崔南善, 秦學文에게 新聞紙法에 依한 時事週刊誌 「東明」을 許可하였다. 이것은 總督府當局이 韓國人에게 雜誌發行을 許容한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이때의 崔南善으로 말하면 이미

前章에서 指摘되었듯이 韓帝國末期로부터 日韓合併이후, 武斷政策아래에서도 雜誌와 圖書 出版에 至大한 功績을 쌓아 놓았으며, 특히 己未年 獨立萬歲運動 때, 獨立宣言書를 起草하고 47人事件에 連座되어 懲役 2年 6個月을 言渡 받고 服役중 假出獄하여 당시 韓國民族의 人氣와 尊敬을 한몸에 지니고 있었다. 齋藤總督은 이러한 韓國民族의 追仰의 對象으로된 그의 人品을 尊重하여 本人의 意思대로 최초의 新聞紙法에 依한 「東明」 創刊을 許容한 것이다. 물론 그를 懷柔하기 위해서 總督府當局으로서는 이러한 特惠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었다는 點도 看過할 수가 없겠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부터 新聞紙法에 依한 것으로 變更되기를 願하고 있었던 「開關」 「新天地」 「新生活」 「朝鮮週報」 등의 各社代表들은 「東明」의 前例를 根據로 猛運動을 일으키게 되었다. 더구나 「開關」 같은 것은 그 創刊 당시부터 뼈저린 苦杯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要請은 한층 強力하였다. 그것은 「開關」 創刊號(1920年 6月 25日字)가 發賣禁止를 당하여 쫓 26日 다시 當局에 忌諱된 部分을 削除한 후 號外로 發行하려 하였으나 또 다시 發賣頒布가 禁止되어 內容을 變更한 후 겨우 同 6月 30日에야 비로소 發賣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同誌는 그후 第6號(1920年 12月 1日字)를 또 押收당하였다. 이때에는 發行人 李斗星이 東大門警察署에서 問招를 받은후 罰金五十圓의 處分을 당하였다. 이에 不服한 李斗星은 곧 正式으로 京城地方法院에 提訴하였으나 同法院도 1921年 2月 27日 역시 罰金五十圓刑의 判決을 言渡하였다. 이 罰金事件에 對하여 李基燦, 朴勝彬, 李升雨, 金泳鎭 등의 在野辯護士들이 同情 辯護에 나섰으나 許可項目以外的 記事를 掲載한 것은 違反이라하여 끝내 罰金刑이 強行되었다.

이러한 쓰다림을 마신 「開關」을 비롯한 「新天地」 「新生活」 「朝鮮之光」 (「朝鮮週報」의 改題) 등 各社代表들은 끈덕진 陳情攻勢로 同 9月 15日, 마침내 前記 四誌는 新聞紙法에 依한 編輯發行權을 얻었다. 總督府當局은 이때 같은 날짜로 親日系인 平壤의 大東同志會 鮮

于簡에게도 역시 新聞紙法에 依한 月刊「共榮」과 週間紙「大東申報」를 許可하였다. 이로써 韓國人發行의 雜誌들도 비로소 政治와 時事問題를 評論할 수가 있게 되어 1922年 後半期를 그 基點으로 韓國雜誌界는 活氣를 띠게 되었다. 이리하여 韓國言論界는 漸次로 熱氣를 띄우고 나왔다. 그러던중 「新天地」는 1922年 11月號에 “日本爲政者에게 告함”이란 論說을 發表하였고 「新生活」도 同年 11月 第11號를 “露國革命記念號”로 發刊하였다. 이에 對하여 神經을 極度로 날카롭게한 總督府當局은 京城地方法院 檢事局과 鍾路署를 動員하여 同 11月 10日 「新天地」 11月號를, 同 14日에는 「新生活」 第 11 號를 각각 發賣禁止의 行政處分을 하는 同時에 「新天地」의 白大鎮과 張在洽을 拘束하였고 同 22日에는 新生活社의 朴熙道社長과 印刷人 盧基禎을 역시 拘束하였다. 특히 新生活社에 對하여는 印刷機를 封印押收하는 한편 金明植, 俞鎮熙, 辛日鎔등을 拘束하였다. 12月 1日에는 다시 新天地社 吳相殷社長과 印刷人 金重煥을 召喚하여 資本金의 出處와 思想關係를 엄중 問答하였다. 그러나 兩誌는 屈치 않고 印刷所를 바뀌가면서 계속 雜誌를 發行하였으나 「新生活」은 마침내 1923年 1月 8日, 無期發行禁止의 行政處分을 받았고 朴熙道, 李恒發, 金明植, 金思民, 辛日鎔, 俞鎮熙등은 懲役 2年 6個月 乃至 1年 6個月의 體刑을 받게 되었다. 「新天地」는 다시 1923年 9月號에 실린 “弱小民族과 貴族階級”이 또 押收가 되어 俞秉璣, 朴濟鎬 등이 拘束起訴되어 懲刑 1年을 言渡받았고 控訴申이던 白大鎮도 體刑 6個月을 言渡받았다. 그중 朴濟鎬는 마침내 獄死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白大鎮以下, 重要幹部들이 拘束起訴되는 바람에 「新天地」는 前記 9月號를 마지막으로써 休刊中 版權許可가 取消되고 말았다. 이들의 罪名은 朝憲紊亂으로 新聞紙法, 出版法, 制令 第 7號등의 違反으로 處刑되었다. 이때 法曹界와 新聞·雜誌등 言論界가 일어나서 酷毒한 處斷의 撤回를 부르짖었으나 虛事이었다. 또 이해에 「東明」一 二卷十號 一 과 「開關」 9月號도 發賣禁止 혹은 押收되는 등으로서 言論界는 또다시 武斷

政治時代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不安과 恐怖속에 빠지게 되었다. 言論彈壓은 雜誌界뿐만이 아니라 青年團體에도 波及되어 朝鮮青年會聯合會의 辛泰嶽이 新義州巡回講演에서 舌禍에 걸려 懲役 1年, 執行猶豫 2年의 言渡를 받았으며 서울青年會員 12名과 北星會員 崔昌益등 6名이 拘束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이러한 騷亂의 1923年中에도 開關社에서는 새로 兒童雜誌 「어린이」를 創刊하였고 基督教 彰文社에서는 「新生命」을, 尹白南은 「藝苑」을 柳春燮, 梁柱東은 「金星」을, 朝鮮物產獎勵會에서는 「產業界」를, 鄭壽榮은 「愛」를, 開城의 朴弘根은 幼年誌 「새별」을, 또 新少年社는 「新少年」을 각각 創刊하였다. 그리고 懲役 6個月을 服役후, 出獄한 白大鎮은 이해 12月 17日 또 다시 「新世紀」를 創刊하였다. 白大鎮은 同誌 創刊號에 “나의 懺悔와 宣言”를 發表하고 「新天地」에 받은 當局의 不當한 言論彈壓을 耶喻하였다. 특히 異彩로운 것은 同誌를 新聞廣告함에 있어 그는 이렇게 내뱉고 있는 點이다. 즉 『本誌의 主幹은 親日될뻔덕, 排日될뻔덕의 白大鎮! 甕桶을 메이려도 氣運이 없고 詐欺橫領을 하려도 그것을 할만한 膽力이 없는지라 할 수 없이 一種의 消遣法(?)으로 이 雜誌를 發行하는 것이다. 사람이 있어 本誌의 主義와 主張을 물은것 같으면, 本社의 社員은 어름 어름 對答할 수 밖에 없다. 萬若 主義가 分明할 것 같으면 爲先, 出版을 許可치 않겠고 다음하여는 出版法違反(秘密히 出版할 것 같으면) 制令 第七號違反이라고 監獄의 監獄인 朝鮮監獄안에 잡아넣어 콩밥, 다홍옷에 그물되 풀리기를 하게 하겠다. 好時期아닌 以上, 날뛰는 것이 得策이 아니겠음으로 어름 어름 主義下에서 本誌를 맨든 것이다. 그러므로 볼것이 없다. (不購讀도 亦無妨)』(10) 그리고 다시 同 新聞廣告文에 『本社의 基本總資金은 月利 三分의 借用金百圓뿐, 本社屋은 文券을 高利貸金業者에게 매긴 傳貫집』이라고 밝히고 있는 點이다.

이상 引用文으로서 個人의 一身上의 어굴함과 苦楚도 그러하러니와 당시 韓國人的 雜誌



運營이 그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 수가 있겠다. 新聞紙法에 依한 雜誌發行을 許容한 總督府當局은 出版法만의 特와는 달리 行政處分에 다시 司法處分까지 強行하여 雪上加霜으로 雜誌發行을 어렵게만 되었다. 물론 이러한 苛酷한 處事는 韓國人의 言論을 彈壓하는 方法이었으나 당시 「東亞日報」가 論評하였듯이 이는 『밥 주고 수저 빼앗는 것이며 죽을 자식이라도 많이 나오나 보자』는 것에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洪淳泌, 金鎮憲, 高裕相, 秦學文, 金用茂, 朴勝彬 등의 雜誌社를 비롯한 出版社, 新聞社, 그리고 法曹界의 여러 代表들은 1923年 3月 17日, 新聞紙法과 出版法의 改正期成委員會를 組織하고 同 3月 27日 다음과 같은 新聞紙法 및 出版法의 改正建議案을 總督府警務局當局에 要求하였다.

[建議書] 1. 出版法의 改正

現今 朝鮮에서 現行하는 出版法은 二種이 있으니 一은 明治 43年 5월 總督府令 제 25號 出版規則이니 日本人에게 適用되었고 一은 隆熙 3年 2월 法律 제 6號 出版法이니 朝鮮人に 適用하는 者이라 그리하여 右 出版規則은 明治 26年에 制定된 者이니 現代의 文化와 社會思想에 徵하면 法規의 不完不備한 點은 一, 二에 不止한다 하겠으나 隆熙 3年 法律 제 6號의 出版法에 比較하면 훨씬 優越한 것이 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바이다. 도대체 同一한 法域內에 있어서 이와 같이 日本人과 朝鮮人과의 差別을 만들어 適用할 法規를 달리 함은 원래 何等の 理由가 있음을 發見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現代의 文化를 다르지 못하는 舊韓帝國時代의 出版法을 朝鮮人に 限하여 이를 適用함과 같은 것은 理解하기에 苦痛을 當하는 바이요 더우기 이 出版法이라는 것은 出版物發行에 對하여 嚴格한 許可主義를 採用한 者이라 手續上의 繁雜은 물론 許可를 얻는데에는 一, 二개월 혹은 一년에 걸치는 長久한 期間을 要케 되어 該出版物은 결국 適宜한 時期를 失하여 一片의 休紙에 돌아가는 例가 적지 않아 出版業者와 같은 者도 이러한 結果로 營業의 機敏을 圖함에 적지 않은 錯誤를 生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自明하다.

2. 豫約出版法을 朝鮮人에게 適用할 事

巨額의 資本을 던져 文書, 圖畫를 出版함에 當하여 豫約出版法에 依하는 것이 便益됨은 여러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朝鮮人으로 豫約出版을 行하려

함에는 日本人의 名儀를 빌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이 결과로 他方에서는 아무 手筈없이 名儀에 代價로 不當한 利得을 취하는 동시에 一方에서는 法の 缺陷에 依하여 不便을 느끼고 不利를 받음은 누구나 인정치 않을 수 없는 바이라 이러한 것은 朝鮮人의 出版業의 振興을 阻害할 뿐 아니라 구태어 日本人의 名儀를 利用하여 脫法行爲을 行함에 이르게 함은 法の 缺陷의 顯著한 結果가 아니고 무엇인가.

3. 著作權登錄에 관한 施設

明治 43年 勅令 제 335號로써 著作權法을 朝鮮에 施行한 者이나 著作權法 제 16條 제 1項에는 「登錄은 行政廳에서 이를 行함」이라 하고 同條 제 2項에는 「登錄에 關한 規定은 命令으로써 이를 定함」이라 한것 외에 登錄의 關係規定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右 著作權法이 施行된 이래 十餘星霜을 지난 今일에 있어서 오히려 이에 關한 命令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關한 對抗條件인 登錄을 받을 方途가 없이 역지로 一個의 救濟方法으로 內務省에서 登錄을 받을 方途가 있다 하니 그 手續의 繁雜은 勿論 더우기 朝鮮文 出版物과 같은 것은 諺文의 관계상 實際로 登錄은 받기가 어렵다. 이처럼 朝鮮에 있는 著作權法은 法規만 있을 뿐이요, 이에 依하여 生한 著作權은 완전히 保障할 方途가 없는 것인즉 이것이 어찌 法制의 한 缺陷이 아니고 무엇이나.

이에 對하여 丸山鶴吉 警務局長은 一部 改正할 것을 비쳤으나 그후 여전히 惡名높은 이 두 法規는 그대로 存續되었다.

여기서 指摘되는 것은 齋藤總督의 이른바 文化政策의 正體이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하나의 懷柔政策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처음부터 그 制限線이 뚜렷한 것이었다. 즉 總督政治의 批判과, 民族獨立思想 및 日本國體와 相反되는 思想 및 言論에는 거침없이 嚴罰彈壓主義로 君臨하되 그렇지않는限, 寬容의 善意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寺內, 長谷川 兩總督時代와 齋藤總督時代와의 差異는 言論出版의 彈壓하는 幅의 廣狹이 있을뿐이요 根本적으로 別로 다름이 없다는 點이다. 다만 韓國言論出版界로서는 前者의 時代보다 後者の 時代に 比較的 훨씬 많은 定期刊行物의 許可를 받았다는 것뿐이다. 이에 反하여 總督府當局으로서는 韓國

人에게 言論機關을 그것이 비록 制限된 것이  
 나마 許容하므로써 韓國人의 思想傾向과 그 分  
 布圖를 一目瞭然하게 把握할 수 있다는데 커  
 다란 成果와 利得을 보았다는 點이다. 이로서  
 武斷政治時代에 있었던 것과 같은 獨立運動을  
 未然에 防止 乃至 粉碎할 수 있다는 自信을 얻  
 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文化政策은 韓國人의  
 好感을 사는데 注力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는 一部 韓國人들을 懷柔買收하는데 效率的인  
 成果를 노리고 있었다. 사실 이미 記述된 新聞  
 乃至 雜誌가운데에는 總督府當局에 懷柔 혹

은 買收된 것이 있었고 또 이에 從事하는 言  
 論人中에 그러한 者가 없지도 않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日本의 對韓植民政策으로서는 齋藤  
 總督의 이른바 文化政策이 總體的으로 보아 武  
 斷政策에 비해 훨씬 成果的이었다고 말 할 수  
 가 있겠다. (未完)

註(7) 「大阪朝日新聞」 1919年 7月 27日字

(8) 「半島時論」 一第3卷 第4號— 1919年 4月  
 10日 發行

(9) 「開闢」 1921年 1月號 所載

(10) 「東亞日報」 1923年 12月 17日字